

의 안 발 의 서

의 변	안 호	2019 -
--------	--------	--------

수신: 거창군의회 의장

2019. 3. .

제목 :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1부. 끝.

대표 발의자 : 이재운 의원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3. . (제 회)

의결사항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제안자	이재운 의원
제안연월일	2019. 3. .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이재운 의원외 10명

1. 주 문

- 정부와 국회는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을 위해 배상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한국전쟁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거창군 신원면의 719명의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 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 왔다.
-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유족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큰 응어리를 가지게 되었다.
-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 집단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통탄할 노릇이다.
-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배상 입법을 촉구한다.

3. 주요내용

-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제 조속 해결 요구
- 국회는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제20대 국회 임기내 현재의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배상특별법을 제정토록 촉구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한국전쟁 중 1951년에 일어난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이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면서 거창양민학살희생자 유족들은 다시 한 번 피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은 과거사에 대한 피해구조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지만,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며,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양민학살사건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하나,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

2019년 3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